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26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1068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7. 12. 19.
판 결 선 고	2018. 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9,930,890원, 농어촌특별세 1,274,230원, 지방교육세 2,548,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26

가. B은 2002. 7. 16.경부터 [redacted]시 [redacted]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동물원을 운영하다가, 동물원 이전 및 법인 전환을 위하여 2013. 8. 31. 설립 중의 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redacted]시 E 임야 442,976㎡ 등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3. 11. 4. 원고를 설립하였고, 2013. 12. 31. 원고에게 위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위 E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 2.경 위 E 토지 중 동물원 부지로 사용될 예정인 92,4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평생교육시설(동물원)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11.경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위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과세예고를 거쳐 2016. 4. 11.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29,930,890원, 농어촌특별세 1,274,230원, 지방교육세 2,548,48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2, 14 내지 16, 52 내지 5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26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동물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산지일시사용신고,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개발행위허가, 동물원설립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받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원고의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조만간 동물원 용도로 사용될 것임이 확실히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동물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추징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26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취득자가 부동산을 해당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자가 법령에 의한 금지 · 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동물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지2】 기재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물원 설치를 위해 진행한 일련의 과정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5. 11. 16.경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원고가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임시도로를 개설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경기도 세정과 세무담당공무원의 2016. 3. 10.자 현지출장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 및 경계선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일부 현장에서는 측벽공사와 계단식 부지 정리 등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26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 10, 11, 13, 17 내지 5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은 그곳에 동물원을 설치하려는 것이었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그 지목과 현황이 모두 임야이었으므로, 이를 동물원 부지로 이용하려면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변경)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위한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인·허가 등을 받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사리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의 제한사유가 있고 이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동물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동물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 훨씬 지난 2016. 3. 10.경까지도 부지조성공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되지 않았고, 원고가 아직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위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26

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사건 토지를 동물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동물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동물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두

판사 박종환

판사 이영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26

【별지1】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16. 2. 3. 법률 제1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 · 예술 ·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 · 고고 · 인류 · 민속 · 예술 · 동물 · 식물 · 광물 · 과학 · 기술 ·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 관리 · 보존 · 조사 · 연구 · 전시 · 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 요건과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2015. 10. 6. 대통령령 제26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등록요건)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장자료, 시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26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각각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10조 관련)

1.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학예사	시설
동물원	100종 이상	1명 이상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 · 수용 시설 4. 동물 진료 · 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 · 오수 처리시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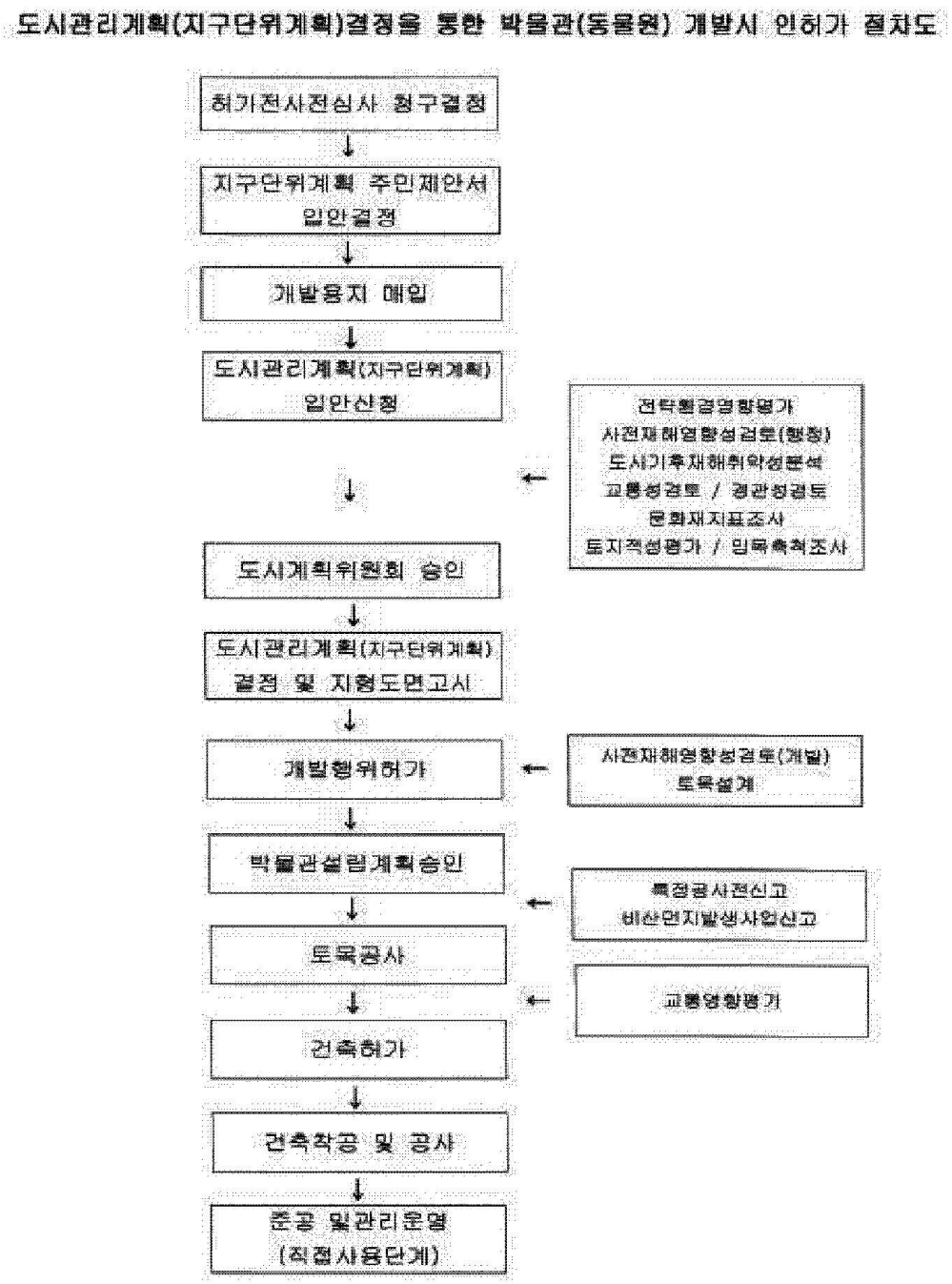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26

【별지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26

【별지3】

동물원 설치를 위한 일련의 과정

일시	행위주체	내용
2012.10.22	B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청구
2012.11.06	피고	사전심사처리결과 통보(조건부 가능)
2013.07.05	B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제안서 제출
2013.07.09	피고, B	동물원 유치 및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2013.10.21	피고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주민제안에 따른 입안 반영 알림
2013.10.24	B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주민제안에 따른 입안도서 제출
2013.12.09	피고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알림
2014.01.08	원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2014.01.15	피고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2014.01.16	피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요청
2014.01.23	피고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주민설명회
2014.02.13	[redacted]시의회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 안건 심의
2014.02.17	[redacted]시의회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통보(의견 없음)
2014.02.21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알림
2014.02.25	피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협의 의견 알림
2014.04.18	원고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자료 제출
2014.04.18	피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요청
2014.05.27	원고	산지일시사용신고서 제출(지반조사를 위한 임시 장비진입로 확보)
2014.06.11	피고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통보
2014.06.13	원고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보완자료 제출
2014.07.24	원고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재보완자료 제출
2014.08.08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내용 알림
2014.08.18	원고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서 제출
2014.09.17	피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14.10.07	원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서 제출
2014.11.	피고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14.11.17	원고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
2015.01.20	피고	개발행위허가(목적: 관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지 조성, 기간: 2015. 1.~ 2016. 12. 3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26

2015.01.22	원고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
2015.02.25	피고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
2015.봄	원고	부지조성공사 착공
2015.04.02	원고, 피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수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수리
2015.05.28	원고, 피고	변경신고(특정공사 사전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수리
2016.09.09	원고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2016.09.20	원고	건축허가 신청
2016.10.03	피고	건축허가 민원서류 보완요구
2016.11.01	피고	원고의 보완연기신청 수리
2016.11.07	피고	개발행위허가기간 연장 신청 (사유: 부지조성공사 완료 단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허가절차 진행 중, 건설공사 공기 부족)
2016.11.16	피고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수정의결)
2016.12.09	원고	개발행위변경허가(허가기간: 2015. 1. ~ 2017. 12. 31.)
2016.12.19	피고	교통영향평가 수정의결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보완사항 수리 통보

끝.